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04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2416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2188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16.
판 결 선 고	2018. 4.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재산세 5,139,135,800원의 부과처분 중 5,069,325,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604,238,270원의 부과처분 중 596,025,280원을 초과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04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다음 행에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한 201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071호로 제기하여 2016. 12. 8.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누2445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4. 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7두4601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8. 2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갑 제1, 2, 3호증"을 "갑 제1, 2, 3, 5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04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 사경화

판사 김성식